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가단5946 판결 [건물명도 등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나21593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가단5946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24. 3. 28.

판결선고 2024. 4. 25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2. 10. 3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오성우

별지